

-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-
2018년 예산집행 지침 변경(안)

2017. 2. 2. 예산팀

-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원 예산 집행기준 등을 정비하여 이에 대비하고자 함

□ 변경대상 및 내용

1. 교육훈련비(특강수당)

- 지방자치인재개발원(구 지방행정연수원) 기준에 맞게 준용
- 세부내용 : 붙임 참조

2018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: 경비 중 교육훈련비
외래교육강사의 강사료는 '지방행정연수원' 또는 '서울시 인재개발원' 등의 강사료를 준용하여 편성

□ 시행일자 : 원장 결재 후 즉시

(붙임)

특강수당 지급기준

현행			변경(안)				
□ 일반 강사수당			□ 일반 강사수당				
구분	대상	지급액	구분	대상	지급액		
특별강사	특1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직 장관(급) 전직 대학총장(급) 전직 국회의원 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1시간 40만원 30분 초과 매시간 30만원 시간보상수당 30만원 	특별강사	특1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1시간 40만원 30분 초과 매시간 30만원 시간보상수당 30만원
	특2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직 차관(급) 전직 공기업 대표(한국은행 포함)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1시간 30만원 30분 초과 매시간 20만원 시간보상수당 20만원 		특2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직 차관(급)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1시간 30만원 30분 초과 매시간 20만원 시간보상수당 20만원
일반강사	1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직 지방의회의원(의장 포함)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기업기관단체의 임원,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직 45급 공무원 컨설턴트(석사학위이상 소지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1시간 25만원 30분 초과 매시간 12만원 시간보상수당 12만원 	일반강사	1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직 4급 이상 공무원(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공무원) 전직 지방의회의원(의장 포함) 유명 예술인·종교인,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,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1시간 25만원 30분 초과 매시간 12만원 시간보상수당 12만원
	2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전직 4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1시간 13만원 30분 초과 매시간 8만원 시간보상수당 8만원 		2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,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1시간 13만원 30분 초과 매시간 8만원 시간보상수당 8만원
	3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, 전산 등 강사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지방행정연수원 및 서울시 인재개발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1시간 8만원 30분 초과 매시간 5만원 시간보상수당 5만원 		3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국어, 전산 등 강사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및 서울시인재개발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1시간 8만원 30분 초과 매시간 5만원 시간보상수당 5만원
	4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1시간 7만원 30분 초과 매시간 4만원 시간보상수당 4만원 		4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1시간 7만원 30분 초과 매시간 4만원 시간보상수당 4만원
	5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1시간 5만원 30분 초과 매시간 3만원 시간보상수당 3만원 		5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1시간 5만원 30분 초과 매시간 3만원 시간보상수당 3만원
※ 해당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, 별도의 방침에 따른 지급 기준으로 지급 가능			※ 해당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, 별도의 방침에 따른 지급 기준으로 지급 가능				

현행

☐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 강의 시

구분	대상	지급액	
공무원	• 장관급 이상	• 최초 1시간 40만원 • 1시간 30분 초과시 30만원	
	• 차관급	• 최초 1시간 30만원 • 1시간 30분 초과시 20만원	
	• 4급 이상	3급 이상	• 최초 1시간 25만원 • 1시간 30분 초과시 12만원
		4급	• 최초 1시간 20만원 • 1시간 30분 초과시 10만원
	• 5급 이하	5급	• 최초 1시간 13만원 • 1시간 30분 초과시 8만원
		6급 이하	• 최초 1시간 8만원 • 1시간 30분 초과시 5만원
공직유관단체 임직원	• 기관장	• 최초 1시간 30만원 • 1시간 30분 초과시 20만원	
	• 임원	• 최초 1시간 25만원 • 1시간 30분 초과시 12만원	
	• 그 외 직원	• 최초 1시간 13만원 • 1시간 30분 초과시 8만원	
국공립 대학교 총장 및 교수	• 총장	장관급 (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 1호 다목)	• 최초 1시간 40만원 • 1시간 30분 초과시 30만원
		차관급 (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 1호 다목)	• 최초 1시간 30만원 • 1시간 30분 초과시 20만원
	• 부교수 이상	• 최초 1시간 25만원 • 1시간 30분 초과시 12만원	
	• 조교수 이하	• 최초 1시간 13만원 • 1시간 30분 초과시 8만원	
	언론인	• 최초 1시간 25만원 • 1시간 30분 초과시 12만원	

변경(안)

☐ 공직자 등

구분	대상	지급액		
공직자 등	특별강사	특1급	• 장관급, 광역자치단체장, 국회의원 • 최초 1시간 40만원 • 30분 초과 매시간 20만원	
		특2급	• 차관급, 기초단체장, 공직유관단체장 • 최초 1시간 30만원 • 30분 초과 매시간 20만원	
	일반강사	1급	• 4급이상 공무원, 지방의회의원 • 공직유관단체 임원(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) • 언론인 • 최초 1시간 25만원 • 30분 초과 매시간 12만원	
		2급	• 5급이하 공무원 • 공직유관단체 직원 • 최초 1시간 13만원 • 30분 초과 매시간 8만원	
	교직원 등	특별강사	특1급	• 대학총장(장관급) • 최초 1시간 40만원 • 30분 초과 매시간 30만원 • 시간보상수당 30만원
			특2급	• 대학총장(차관급) • 최초 1시간 30만원 • 초과 매시간 20만원 • 시간보상수당 20만원
일반강사		1급	• 대학의 교수 • 최초 1시간 25만원 • 30분 초과 매시간 12만원 • 시간보상수당 12만원	
	2급	• 대학의 강사 등 • 최초 1시간 13만원 • 30분 초과 매시간 8만원 • 시간보상수당 8만원		
1.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2. “공직자 등”이란 「청탁금지법」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(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) 규정이 적용됨 3. 시간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 : 외국 또는 지방거주재(수도권(서울, 경기도) 이외에 거주하는 재 4. “공직자 등”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, 원고료,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. 5.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-2호(2016.9.28.)를 참고하여 적용 6.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(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)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				